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594

발의연월일: 2022. 7. 21.

발 의 자:정태호·임호선·고민정

김정호 · 조정훈 · 변재일

이성만 • 황운하 • 강선우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원재료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신청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직접 협의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주된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상 변동되는 경우 또는 노무비가 최저임금인상률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등으로 지나치게 까다롭고, 수탁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과 같은 보복조치를 우려하여 조정 협의를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납품대금조정 제도가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원재료를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별도의 조정 신청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계약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자동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시 장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100분의 3 이상 상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고하 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 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함(안 제13조제9항 신설).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
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
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및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제6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한다.

- 1. 위탁의 내용
- 2. 하도급대금의 금액
- 3.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주요 원재 료
- 4. 제3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100분의 3 이상 상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
- 5. 제4호 외에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6.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
- 7.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 8. 목적물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의 종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관한 기준과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 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등에게 그 사용을 권고하여야 한 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1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10항"을 각각 "제11항"으로 한다.

⑨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하도급대급의 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 같은 항 제4호의 방법으로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 전단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13조제11항"을 "제13조제1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제11항"을 "제13조제1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1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제9항"을 "제3조제10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	
존) ① (생 략)	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서면에는 <u>하도급대</u>	② <u>다음 각</u>	
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	<u>ই</u> 의	
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		
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		
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		
<u>으로 정하는</u> 사항을 적고 원사		
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		
여야 한다.		
<u><신 설></u>	1. 위탁의 내용	
<u><신 설></u>	2. 하도급대금의 금액	
<u><신 설></u>	3.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	
	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	
<u><신 설></u>	4. 제3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의	
	<u> 가격 상승(100분의 3 이상</u>	
	<u>상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u>	

<신 설>

<u><신 설></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③ (생략)
-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고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
5. 제4호 외에 제16조의2제1항
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6.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
7.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8. 목적물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기의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주요 원자료의 종류, 같은 항 제4호에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주요 원 재료의 종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에 관한 기준과 하도급대금 조 정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5)</u>	 - <u>제4항</u>	

		,		
<u>6</u>			 	
	제4	<u>5</u>]	 	

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원사업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제5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 자가, 제6항의 회신에는 원사업 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야 한다.
- ⑧ 제5항의 통지 및 제6항의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u> 7</u> <u>শ6</u> ষ্ট
⑧ 제6항
<u>제7항</u>
<u> ⑨</u> <u>제6항</u> <u>제7항</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생 략)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 저 정·개정 및 사용) ①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⑦ 제6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u>⑩</u> (현행 제9항과 같음)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
정·개정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
래위원회는 원재료 가격의 상
승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등에게 그 사
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u>⑤</u>
<u>제4항</u>
$\underline{6} \cdot \underline{7}$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u>⑧</u> <u>제7항</u>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② (생 전략)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 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 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 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 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 ⑧ (생 략)

<신 설>

⑨·⑩ (생 략)

세6조(선급금의 지급) ①·② (현
행과 같음)
3
제10항제11항
세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
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하도급

⑨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하도급 대급의 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 같은 항 제4호의 방법으로 조정이 반영된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u>⑩·⑪</u> (현행 제9항 및 제10항 과 같음) ①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 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 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 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 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 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 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 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 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 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 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 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 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 4조의4제1항, 제25조의2, 제33 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급사업 자로 본다.

<u>(12)</u> <u>제11항</u>
<u>제11항</u>
<u>제11항</u>

1. • 2. (생 략)

-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 급대금의 조정) ① ~ ③ (생략)
 -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 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 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 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 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 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 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 · 수수료율에 관하 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 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 부터 15일"로 본다.
-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
 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
 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
 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

1. 2. (6.0)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
급대금의 조정) ① ~ ③ (현행
과 같음)
4
제10항제1
<u>1항</u>
<u>.</u>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제13조제12항-

1 • 9 (형해과 간은)

는 아니 된다.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 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제13조제12항----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 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 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 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 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 내에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되거나 제24조의4제1항제1 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 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 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 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시정조치) ①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 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 -----제5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3 -----제10항-----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 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 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 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 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 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 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 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 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 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3조제1항부터 <u>제4항</u>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 2. <u>제3조제9항</u>을 위반하여 서류 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과징금) ①
1 <u>제5항</u>
2. <u>제3조제10항</u>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원사 업자나 수급사업자

- 3. ~ 6.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 조) ① (생 략)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 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 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 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 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 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 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 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 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5항</u> <u>제10항</u>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